

## FTA에서 원산지 증빙서류 증명 책임에 관한 일고

임 목 삼\* · 임 성 철\*\*

- 
- I. 서 론
  - II. 원산지 증빙서류 증명 책임에 관한 법원
  - III. 원산지 증빙서류 증명 책임 관련 판례 및 행정심판례
  - IV. 결 론
- 

주제어 : FTA, 원산지 증명, 원산지 검증, 원산지 증빙서류, 원산지 증빙서류 증명책임

### I. 서 론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발효 건수는 중남미(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와의 가서명(2017년 3월)을 포함해 FTA 체결 건수 16건(57개국) 발효건수 15건(52개국)으로,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이후 15년 만에 괄목할 만한 FTA 경제영토 확산 및 FTA 활용성과를 이뤄내 1인당 GDP 3만 불 시대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 국제원산지정보원 부연구위원(제1저자), E-Mail : mslim@origin.or.kr

\*\* 강남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 조교수(교신저자), E-Mail : kangnamtrade@kangnam.ac.kr

<표 1> FTA 발효국과의 교역 현황

(단위: 억불)

구분		'11	'12	'13	'14	'15	'16	'17.9
FTA 발효국	수출	1,457	2,044	2,163	2,467	2,358	3,504	3,123
	수입	1,204	1,666	1,710	2,048	1,824	2,610	2,242
FTA 발효국과 교역		2,661	3,710	3,873	4,515	4,182	6,114	5,365
전체	수출	5,552	5,479	5,596	5,727	5,269	4,955	4,302
	수입	5,244	5,196	5,156	5,255	4,365	4,061	3,549
전체 교역		10,796	10,675	10,752	10,982	9,634	9,016	7,851
FTA/전체 비중(%)		24.7	34.8	36.0	41.1	43.4	67.8	68.3

\* 자료: 관세청 FTA포털 통계자료 인용(fta.customs.go.kr visited in 2018. 1)

물품(visible goods)의 경우 FTA 활용 방법은 협정 적용 대상인 경우에 FTA 특혜 세율의 적용을 통해 수입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데, 화주는 수출자 등이 제공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FTA 특혜를 활용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의 경우에는 수출자 관세당국이나 지정된 기관이 발급하며, 자율발급의 경우에는 수출자 등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각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표 2> FTA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구분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증명방식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자율	자율증명
발급주체	수출자	싱가폴 : 세관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수출자 생산자	아세안 : 세관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인도 : 수출검사위원회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수출자	페루 : 통상본부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자율 : 수출자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구분	터키	호주	캐나다	베트남	중국	뉴질랜드	콜롬비아	
증명방식	자율증명	자율(호주는 기관+)	자율증명	기관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자율증명	
발급주체	수출자	자율 : 수출자, 생산자 기관(호주) : 상공회의소, 호주산업협회	수출자 생산자	베트남 : 산업무역부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중국 : 무역촉진위원회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서에 의해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FTA 특혜세율에 따라 수입관세를 산출하여 관세당국에 신고함으로써 FTA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협정 당사국 국민에게만 부여하는 혜택으로 수입관세당국은 FTA 당사국 외 무임승차를 방지하여 공정무역질서를 보호하고자 원산지조사(검증)를 실시하고 있다.

<표 3> FTA별 협정관세 적용 수입실적

(단위: 백만불, %)

발효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수입	FTA 특혜수입	비율	총수입	FTA 특혜수입	비율	총수입	FTA 특혜수입	비율	총수입	FTA 특혜수입	비율
칠레	4,658	1,964	42.2	4,812	2,297	47.7	4,412	2,260	51.2	3,702	2,154	58.2
EFTA	6,409	2,212	34.5	5,639	1,966	34.9	5,122	1,938	37.8	4,042	1,986	49.1
ASEAN	53,339	21,028	39.4	53,429	19,928	37.3	45,037	17,556	39.0	44,308	18,918	42.7
인도	6,180	1,540	24.9	5,275	1,817	34.4	4,240	2,112	49.8	4,189	2,176	51.9
EU	56,213	27,600	49.1	62,341	31,604	50.7	57,178	31,333	54.8	51,901	30,170	58.1
페루	1,983	617	31.1	1,434	223	15.5	1,146	228	19.9	1,295	263	20.3
미국	41,512	15,425	37.2	45,275	16,220	35.8	44,029	16,874	38.3	43,212	16,925	39.2
터키	692	241	34.9	655	272	41.5	789	285	36.1	738	273	37.0
호주	발효 전						16,451	3,768	22.9	15,165	5,084	33.5
캐나다							3,985	868	21.8	3,942	1,247	31.6
중국										86,962	19,988	23.0
뉴질랜드										1,098	553	50.4
콜롬비아										433	54	12.5
합계	170,985	70,627	41.3	199,301	74,449	37.4	182,390	77,220	42.3	260,987	99,791	38.2

\* 주: 한·싱가포르 FTA 특혜 수입 실적은 한·아세안 실적에 포함.  
 \*자료: 관세연감, FTA지원행정, 2017.

FTA가 확산됨에 따라 FTA 원산지 적용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원산지 검증도 증가추세에 있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부적정한 FTA 특혜관세의 적용으로 추정당한 건수가 1,824건, 금액으로 약 2,442억 원을 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검증에 의한 추징의 대부분은 EU, 미국, ASEAN, EFTA, 중국과의 FTA 교역에서 나타났는데 EU는 1,184건 1,235억원, 미국은 270건 538억원, ASEAN은 192건 537억원, 중국은 '16년 한해만 75건 31억원을 추정하여 전체 추정 건수의 97% 추정 금액의 99%가 집중되었다.

EU, 미국, ASEAN, EFTA, 중국과의 FTA 교역은 FTA 발효국 전체 수입 금액의 90% 내외를 점유하고 있으며, FTA 특혜 수입 비중 또한 전체의 약 90%에 해당하여 교역량과 원산지 검증 건수나 추정 금액이 비례함을 알 수 있다.

1) 자유무역협정 상 원산지검증은 우리나라 관세법 절차법 상 조사를 준용하여, FTA특례법 상에서는 원산지조사라고 하므로 본문에서는 원산지검증과 원산지조사를 같은 의미로 혼용한다.

〈표 4〉 FTA 원산지 검증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수출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수 출 검 증	업체수	242	298	294	210
	C/O건수	1,198	3,282	1,744	1,119
수 입 검 증	업체수	476	826	1,038	892
	C/O건수	4,681	11,636	13,765	9,260
추 징 현 황	건수	330	442	546	506
	금액	45,429	76,114	55,067	67,571

\* 자료: 관세연감, FTA지원행정, 2017.

FTA 활용 목적은 각 협정문 서문과 규정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무역을 자유화하고 서비스 무역(투자)을 촉진하여 상호이익의 창출 및 국제 무역의 확대와 발전에 기여하여 경제를 증진하고자 함이다.<sup>2)</sup>

그러나 공정무역질서 보호를 위한 원산지 검증으로 인해 FTA 활용 증진이 저해된다면 이 또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수입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으로 FTA 특혜 배제가 결정되면, 수입자는 일반세율에 따라 산출된 수입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원산지 검증에서 확인된 원산지증명서 상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은 수출자(생산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적으로도 그러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하자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아 FTA 특혜에 활용한 결과 예견될 수 있는 이득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관세당국 등으로부터 신용 또한 하락되는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

반면 수출자는 하자있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제공으로 인해 관세당국으로부터 형벌을 면치 못하겠지만, 그로 인하여 손해를 본 수입자에 대한 협정상의 책임이 없다. 이로 인해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절차를 추진하거나 예견되었던 FTA 특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원산지증명 책임에 관한 협정과 국내 관련법의 법적 기준을 검토하고, 관련 FTA 특혜 배제 사례(법원판례 및 행정심판 사례)를 인용하여,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무역기업과 관세당국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유사한 선행연구로 권순국(2017)은 FTA 원산지규정상 수출자의 의

2) 한-미 FTA 협정문 서문과 한-EU FTA 제1.1조 제2항 및 한-중 FTA 서문 등.

무위반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수입자의 대응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FTA 원산지 기준(일반기준, 품목별 기준, 보충 기준 등)의 준수 연구<sup>3)</sup>와 FTA 수입 검증에 관한 기업의 대응 방안 연구<sup>4)</sup>가 주를 이루고 있다.

## II. 원산지 증빙 서류 증명 책임에 관한 법원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 증빙서류에 관한 증명 책임과 관련된 규정을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FTA 관세특례법(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법원 판례와 행정심판<sup>5)</sup>과 관련된 한-EU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한-미 FTA, 한-인도 FTA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1. FTA 관세특례법에서 원산지 증빙 서류 증명 책임

#### 1) 원산지 증명 책임

수입자는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으려면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고, 수출자 및 생산자는 수출물품이 체약당사국에 수입되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협정이나 FTA 특례법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sup>6)</sup>

수입자는 관세당국에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고, 수출자(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즉, 수입자의 원산지 증명 책임은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것이고,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서 작성이나 발행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작성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이영수·권순국(2012)은 직접운송규정 연구, Cadot et al.(2006), Estevadeordal and Suominen(2008), Stocker(2011)는 원산지 기준 연구, Inama(2009)는 원산지 기준의 역할과 기업의 원산지 관리 전략 연구.

4) 김만길·정재완(2013), 이지수(2015), 정재완(2015), 최양식·이병락(2015)은 원산지 검증 규정 연구, 황남재·정재완(2015), 이윤·김제선·정홍주(2016)은 원산지 검증 관련 기업 연구.

5) 법원 판례는 한-EFTA 1건, 행정심판례는 한-EU 13건, 한-EFTA 11건, 한-아세안 9건, 한-미 5건, 한-인도 1건 등을 조사하였다(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2018년 1월 기준).

6) FTA특례법 제10조(원산지증명).

## 2)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 책임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하여 발급되도록 하고 있는데, 기관발급은 관세당국 또는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자율발급은 협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출자가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이나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에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범위 상 한-아세안 FTA, 한-인도 FTA는 기관발급이고, 한-EU FTA, 한-EFTA FTA, 한-미 FTA가 자율발급이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와 수출신고필증 사본·송품장·원산지확인서나 원산지소명서 등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현장 정보 등을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sup>7)</sup>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출자·생산자·수입자<sup>8)</sup>는 원산지확인서나 원산지소명서 또는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정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을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재·관리하도록 하고 있다.<sup>9)</sup>

따라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발급기관이 발급신청자가 제공한 서류나 현장 정보 등을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스스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 3) 원산지 관련 서류 관리 및 보관

수입자·수출자·생산자는 협정에 따라 원산지의 확인이나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sup>10)</sup>

수입자에게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원산지증빙서류는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필증 등이고,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류 및 물품의 생산이나 원재료 구매에 사용된 서류와 재고관리대장 등이며, 생산자는 수출자와 대부분 일치한다.<sup>11)</sup>

수출자와 생산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근거서류를 보관토록 규정

7) FTA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 발급절차).

8) 한-EU는 수출자, 한-EFTA는 수출자 및 생산자, 한-미는 수출자와 생산자 및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9) FTA특례법시행규칙 제14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10) FTA특례법 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11) FTA특례법시행령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하는 이유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원산지 검증 시 기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증명하기 위한 근거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함과 자율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원산지 검증 시 기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입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성 여부와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인 경우에는 발급기관에 있고,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생산자)에게 있다.

## 2. FTA 협정 상 원산지 증빙 서류 증명 책임

### 1) 한-EU FTA

한-EU FTA에서 원산지증명 방식은 자율발급이므로 원산지신고문구를 송품장 등에 기입한 원산지신고서를 수입자에게 제공하여 FTA 특혜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sup>12)</sup> 6천유로가 초과된 물품은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수출자가 원산지신고문구에 인증번호를 함께 기입하여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sup>13)</sup>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공급자나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협정 상의 원산지 기준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자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되도록 하고 있어<sup>14)</sup>, 원산지 검증 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의 증명서류 보관책임과 제출책임을 수출자에게 규정하고 있다.

### 2) 한-EFTA FTA

한-EFTA FTA 또한 한-EU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원산지신고서를 수출자나 생산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 서류의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어 원산지신고서의 발급책임과 증명책임을 모두 수출자에게 규정하고 있다.<sup>15)</sup>

또한 수출자 관세당국의 요청 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 사본 및 그 신고서를 증빙하는 모든 서류의 사본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

12) 한-EU FTA 제5부 원산지증명 제15조 일반요건.

13) 한-EU FTA 제5부 원산지증명 제16조 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제1항.

14) 한-EU FTA 제5부 원산지증명 제16조 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제3항.

15) 한-EFTA FTA 제2부 통관절차 제4절 원산지증명 제15조 원산지신고서 제4항과 제5항.

어<sup>16)</sup>, 원산지검증 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의 증명서류 보관책임과 제출책임을 수출자에게 규정하고 있다.

### 3) 한-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는 기관발급이므로 수출자나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발급기관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sup>17)</sup>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신청 때 마다 최선을 다하여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이 협정을 준수하는지, 증빙서류와 일치하는지, 수출물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적절히 심사(proper examination)하도록 하고 있다.<sup>18)</sup>

### 4) 한-미 FTA

한-미 FTA는 수입자·수출자·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FTA 특혜관세를 신청토록 하고 있다.<sup>19)</sup>

당사국은 수출자나 생산자의 원산지증명이 스스로 인지하고 있거나 원산지 물품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신뢰하거나 서면 증빙서류에 의해 완성되도록 하고 있다.<sup>20)</sup>

### 5) 한-인도 FTA

한-인도 FTA도 한-아세안 FTA와 같이 기관발급이므로 수출자나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발급기관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sup>21)</sup>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신청 때 마다 최선을 다하여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이 협정을 준수하는지, 증빙서류와 일치하는지 등을 원산지증명서 신청건별로 적절히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sup>22)</sup>

---

16) 한-EFTA FTA 제2부 통관절차 제4절 원산지증명 제15조 원산지신고서 제7항.

17)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4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제1항.

18)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4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제3항.

19) 한-미 FTA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2절 원산지 절차 제6.15조 특혜관세대우 신청 제1항.

20) 한-미 FTA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2절 원산지 절차 제6.15조 특혜관세대우 신청 제3항.

21) 한-인도 FTA 제4장 원산지 절차 제4.2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22) 한-인도 FTA 제4장 원산지 절차 제4.3조 원산지증명서의 신청 제3항.



## 6) 소결

한-EU와 한-EFTA 및 한-미 FTA는 표현을 다소 다르게 하고 있으나 자율발급된 원산지신고나 원산지증명서의 근거서류에 대한 보관의무를 수출자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자에게 책임지도록 하여 수입통관이나 원산지 검증 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증명 책임을 수출자 등에게 부여하고 있다.

한-아세안 및 한-인도 FTA는 기관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기관이 증빙서류나 사실관계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 발급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23)</sup>

## Ⅲ. 원산지 증빙서류 증명 책임 관련 판례 및 행정심판례

### 1. 수입자가 원재료 생산정보를 직접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사례<sup>24)</sup>

#### 1) 사실관계

쟁점물품은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았고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수출자에게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법인 등은 수출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한 협력사가 발행한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는 제출하였으나 동 원산지확인서의 내용을 입증할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여 최종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부인된 것이고, 수출자 및 1차 협력사는 원산지확인서 및 원재료명세서에 제출하였으나, 2차 협력사가 원산지확인서는 제출되었으나 원재료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원산지가 부인됨에 따라 역순으로 부인됨으로써 최종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부인된 것이고, 수출자는 원산지확인서 및 원재료명세서는 제출하였으나, 1차 협력사인 17개사가 17가지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는 제출되었으나 17가지 원재료의 원재료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않아 원산지가 부인됨에 따라 역순으로 부인됨으로써 최종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부인되었다.

23)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 14조 검증.

한-인도 FTA 제4장 원산지 절차 제4.11조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검증 제2항.

24) 조심2015관0053, 2015.6.3.

## 2) 당사자의 주장

청구법인은 한-미 FTA 협정 제6.15조 제3항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작성 시 반드시 협력사의 서면 또는 전자증명을 근거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물품이라는 인지만 있으면 가능한데도 처분청은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 1차 협력사(17개사)에게 2차 협력사에게까지 공급한 부품에 대한 원재료명세서, 원가증빙 자료 등을 요청하고 있는바 해당 협력사에게 사전에 정식 서면질의서도 없이 중요한 영업비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며, 협력사가 발행한 원산지확인서만으로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수출자의 원산지 판정 근거서류를 검토한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원재료 중 원산지재료로 분류하여 협력사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17건에 대한 원산지 판정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FTA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한 법정기간인 20일의 보정할 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보정기간내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된 부품 17건의 원산지를 부인하였으며, 17건 원재료의 원산지가 비원산지재료로 분류됨에 따라 쟁점물품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충족하나, 부가가치기준은 불충족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부인하고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FTA 특례법 제13조에 의한 원산지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나, 쟁점물품의 원산지 판정 근거서류가 불충분하여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한-미FTA 협정 제6.18조 제3항 및 FTA 특례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3) 조세심판원 판단

한-미 FTA 협정 제6.18.조에서 “검증의 결과로 당사국이 물품이 원산지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그러한 취지의 예비결정내용을 제공하고 물품이 원산지 물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그 당사국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미 FTA 협정 제6.19조에서 “수출자/생산자의 증명이 신청의 기초를 이루는 때에,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수출자/생산자가 증명을 작성하는 데 의존한 모든 정보를 수출자/생산자가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FTA 특례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입자·수출자·생산자,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 및 협력사가 발행한 원산지확인서 등은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 1차 협력사(17개사)와 2차 협력사에게, 공급한 부품에 대한 원재료명세서 및 원가증빙 자료 등을 요청하고 있는바, 해당 협력사 등에게 서면요청 등의 절차 없이 원가증빙 자료 등 중요한 영업 비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는 점, 공급자가 원가증빙 자료 등을 영업비밀자료라는 이유로 공급받는 자 등에게 제출하기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자료 확보 및 제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수입자인 청구법인은 수출자 및 생산자가 관련정보를 당사국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의무만 있고 원재료 생산자인 협력사로부터 정보를 직접받아 제출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FTA 특례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해당 협력사 등에게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2. 서류보관기관 경과를 들어 원산지 검증을 거부 사례<sup>25)</sup>

### 1)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2008. 3. 24. ~ 2009. 9. 21. 동안 초과용 백금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처분청에게 제출하고 한-EFTA FTA협정에 의한 협정세율(0%) 을 적용받아 통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11. 11. 30.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서면 조사를 실시하였고, 관세청에서는 2012. 7. 6. 쟁점물품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스위스 관세당국은 2012. 9. 27. “문제가 되는 원산지신고서가 2008. 3. 18. 과 2009. 9. 15. 사이에 작성되어 스위스 법률에 따라 신고서 보관기간(3년) 이 경과하여 귀측에서 요청한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특혜원산지 제품과 상반되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 첨부 원산지 증거는 올바르게 발행된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합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 3. 11. ,

25) 조심2013관0179, 2013.12.16.

4. 29.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고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FTA FTA협정 부속서I 제28조 및 FTA특례법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스위스 관세청의 원산지검증회신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 2) 당사자의 주장

청구법인이 2008. 3. 24. ~ 2009. 9. 21.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원산지 확인을 스위스 국내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보관기간(3년) 이 경과하기 전인 2011. 3월 이전에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 요청을 하였다면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을 위한 자료들을 제공받아 특혜원산지를 인정받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원산지신고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스위스 관세당국은 자국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보관기간이 경과되어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고 그 결과 쟁점물품 협정관세를 배제한 귀책사유는 스위스 관세당국에 있다고 처분청 스스로 세관장담변서를 통해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협정관세 배제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관세 등을 부과하였는 바, 결국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나 스위스 관세당국의 의무해태로 인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시키는 위법한 처사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한-EFTA FTA에 따라 수입당사국은 언제든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출당사국은 검증결과를 회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관세당국이 자국법상의 서류보관기간 경과를 이유로 검증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스위스 관세당국 스스로가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EFTA FTA 부속서 제21조(기록유지요건) 에 의하면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신고서 및 각 물품의 원산지 지위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를 최장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동 협정 부속서 제21조 및 제24조 2항에 의거 수입당사국은 언제든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바, 수출당사국은 서류보관 기간인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수입당사국에서 검증요청이 있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상대국의 검증에 대비하여 한-EFTA FTA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FTA특례법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 및 제출) 제1항에서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협정 부속서I 제24조에 따라 언제든지 사후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수입국 관세당국에서 요청하는 경우, 수출

국 관세당국은 검증 결과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회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법에 서류보관 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산지신고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물품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회신한 것은 스위스 관세당국 스스로가 협정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을 뿐,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검증을 수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유사 사례로 조심 2011관138호 및 2012관16호를 보면, 조세심판원은 서류보관기간 경과로 검증불가 회신한 건에 대하여, “스위스 관세당국에서 스위스 국내법에 서류보관기간이 최소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3년 이전에 발급된 원산지신고서는 검증 불가하여 검증을 하지 못한 부분까지 협정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 3) 조세심판원 판단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관 관련법령을 보면 FTA특례법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제1항에 수출입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스위스의 경우 스위스 관세법 제41조 및 관세이행법 제96조(서류보관)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에 관한 서류 보관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건대,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안(스위스 관세당국의 서류보관기간 3년 국내입법) 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이 스위스산인지 원산지검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정관세 적용이 어려워 특혜관세를 배제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3. 소결

FTA 원산지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 조회할 수 있는 판례는 1사례이고 행정심판 약 39사례로 원산지 검증 건수 및 추정세액이 증가하는 것과 달리 비교적 명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FTA 특혜배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고에서 인용한 두가지 행정심판례는 모두 수입자에게 원산지 증명을 위한 입증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사례로 한 건은 수출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여 원산지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심판례이고 다른 하나는 보관기간이 종료되어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협정 상대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간접검증 회신에 따라

FTA 특혜배제가 정당하였다는 심판례이다.

원산지를 증명할 방법은 수출자 등에게 있으나 그 책임은 수입자가 지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수출자나 수출과 연계된 산업에 종사하는 업종에 원산지 관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원산지증명 책임에 관한 법적 기준을 검토하고, 관련 FTA 특혜 배제 사례(법원판례 및 행정심판 사례)를 인용하여,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무역기업과 관세당국에 원산지 증명 책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첫째가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증명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FTA 특혜배제를 당해 예상치 못한 손해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과 둘째, FTA 활용은 협정 당사국 수입자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증명의 책임은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FTA 활용 당사자에게 모든 선택과 책임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것이 아니라 협정 당사국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입자가 증명책임을 지고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한-미 FTA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자가 FTA 특혜를 받기 위하여 관세당국에 신고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및 사실관계의 확인을 입증할 책임은 수입자에게 없고 수출자나 생산자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발급기관에게 있다.

즉,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보관책임만 있을 뿐 현실적으로 증명능력이 없으므로 증명책임이 없다.

그러나 수출자나 생산자는 자국의 관세당국 또는 협정 당사국에서 원산지 검증을 위해 신청하였거나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입증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제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협정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보관할 의무도 지게 되며,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하였을 때는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

라 제재를 받게 된다.<sup>26)</sup>

반면 수출자의 원산지증명 위반으로 인한 수입자의 특혜배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하자있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관세당국에 FTA 특혜를 신청한 뒤 원산지 검증으로 인해 특혜가 배제된다면 수입자는 예정할 수 없는 손해에 직면하게 된다(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FTA 수출 활용 증진을 위한 정부 지원은 교육(인력개발 및 보급) 및 컨설팅(상담), 관련 자료의 효율적 제공 등 다양하지만, 이는 FTA 상대국의 수입자가 안정적으로 FTA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결과이다.

FTA 활용 대상(품목)을 결정하여 원산지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원산지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에 기초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여 제공한 뒤, 증빙자료를 효율적으로 보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덕분에, 우리나라와 FTA 체결한 협정 당사국의 수입자는 안정적인 FTA 특혜를 활용하여 FTA 수출 활용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FTA 활용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원산지 검증 건수와 금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반면, 행정심판례를 보면 FTA 협정상대국의 수출자는 우리나라와 같이 FTA 수출활용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셋째, FTA 수출활용 지원의 목적은 FTA를 통한 수출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본격적인 FTA 활용지원을 시작한지 8년차가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FTA 활용지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수출검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의 FTA 지원제도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제도로 FTA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최적이거나 FTA를 활용하고자 하거나 거래업체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 영세기업 등에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뢰할만한 FTA 전문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수출검증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FTA 협정당사국에서는 우리나라와의 FTA 활용을 안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수출자로부터 하자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아 관세당국으로부터 FTA 특혜가 배제된 수입자의 손해를 수출자 등에게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6) FTA특례법 제44조(벌칙).

공적보험인 무역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담보한 위험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수출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수입자의 원산지 증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합리적으로 수출자나 수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 활용 수출 보증기관을 설립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불충족에 따른 수입자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FTA 활용 수출 보증<sup>27)</sup>은 FTA 협정 상대국과 협상을 통해 양국이 통합적으로 시행할 만한 제도로서, FTA의 본질이자 목표인 물품무역의 자유화 및 무역의 촉진을 통한 상호이익의 창출 및 국제 무역의 확대와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FTA 활용 수출 보증을 위해서도 전면적인 수출 원산지 검증과 마찬가지로 신뢰할만한 FTA 전문 공공기관이 보증 신청자의 원산지관리수준을 평가하거나 지원하도록 하는 실무적 지원장치가 부수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

27) 무역보험제도를 활용한 원산지위험관리는 부보위험이 해외에서 발생되지 않아 도입이 힘들지만 보증 제도를 활용하면 국내의 수출자는 대외적으로 안정적인 FTA 활용 기반을 갖게 되어 획기적인 FTA 활용 수출 증진의 계기가 될 것이고, FTA 협정 상대국 또한 상호호혜적으로 보증 제도를 역시 도입한다면 원산지 검증의 부담 없는 자유무역이 가능하게 된다.



## 참 고 문 헌

- 권순국, “FTA 원산지규정상 수출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수입자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8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7. 5.
- 김만길·정재완, “한국과 미국, EU의 FTA협정 상 원산지검증에 대한 비교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8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3. 5.
- 김우태, “FTA 원산지규정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5. 12.
- 노민선, “제3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15. 11.
- 박지은, “FTA 원산지사후검증 현황 및 시사점”, 트레이드포커스 2016년 9호, 국제무역연구원, 2016. 3.
- 박철구, “원산지정보의 유통 촉진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2013. 2.
- 심재권, “FTA 활용역량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3. 8.
- 어명근·이병훈,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 현황과 과제”, KREI 농정포커스 제96호, 농촌경제연구원, 2014. 10.
- 이시균·방글·공정승, “중장기 산업별 취업자 수 전망 2014-2024”, 고용이슈, 한국고용정보원, 2016. 1.
- 이영수·권순국, “FTA 원산지규정상의 직접운송원칙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12.
- 이윤·김제선·정홍주, “한·미 FTA의 원산지검증리스크 식별 및 체크리스트 개발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6. 6.
- 임목삼,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8권 5호, 한국무역학회, 2013. 11.
- \_\_\_\_\_, “중소기업의 FTA 수출증대를 위한 무역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4권 3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3. 9.
- 임목삼·임성철, “한·중 FTA와 기체결 주요 FTA 원산지 규정과 절차 비교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6. 2.
- \_\_\_\_\_. \_\_\_\_\_, “Mega-FTA 시대에 원산지 누적기준의 활용과 대책”, 무역학회지

제41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16. 11.

임목삼 · 최미수 “한국의 FTA 효과와 추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 16호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5. 02.

Cadot, O. et al., *The Origins of Goods: Rules of Origi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Estevadeordal, A. and Suominen, K., *Gatekeepers of Global Commerce: Rules of Origin and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08.

Inama, S., *Rules of Origin in International Tra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Stocker, W., “Comparative Study on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WCO Research Paper 12*, 2011.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www.moleg.go.kr](http://www.moleg.go.kr)

관세청 FTA포털 [fta.customs.go.kr](http://fta.customs.go.kr)

## ABSTRACT

### A Study on the Liability of Supporting Evidence of a Certificate of Origin in FTA

Mok-Sam LIM · Sung-Chul L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standards of agreements on the origin of liability and the relevant laws in Korea, to suggest implications for custom authorities and traders wishing to benefit from preferential tariff via FTA, citing the excluded cases of related FTA preferences (court cases and administrative judgments).

In order to examine the provisions related to supporting evidence of the origin of liability in FTA, we examined FTAs agreed between Korea and EU, EFTA, ASEAN, U.S., and India relevant to FTA Special Customs Act, court cases and administrative judgements.

If verifying the origin to protect the fair trade order impedes to promote utilizing FTA, solutions will need to be suggested.

If FTA preference is exempted due to verifying the origin by the import customs authorities, the importer shall pay the income tax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tax rate.

This is because the certificate of origin confirmed during verification process is different from the actual origin.

In most agreements, the exporter (the producer) shall issue the certificate of origin and since the importer has no other option than obtaining the certificate of origin from the exporter, it may face consequences such as declined credibility from the custom authorities in addition to being disqualified for FTA preferential, if the certificate of origin received from the exporter has flaws.

On the other hand, the exporter cannot help but being punish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due to issuing defective origin certificates, but it doesn't have conventional liabilities for damages incurred to the importer. As a result, importers are forced to pursue legal proceedings to claim damages to exporters or to give up FTA preference.

As FTA is increasingly utilized, the number and amount of origin verification in Korea has continuously been increasing while administrative judgements indicates other FTA exporters doesn't seem to gain any support in utilizing FTA like Korea does.

It has been 8 years since full-scale supports in FTA launched and now is the time to introduce more efficient and intensive FTA support system

In this regard, it is desirable to conduct comprehensive verification on export

Next, an institutions that assures FTA-based exports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compensate the importer's damages that may occur from disqualified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the exporter.

Keywords : FTA, Certification of Origin, Supporting Evidence of a Certificate of Origin, Origin Verification